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직업상담원 채용공고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고용센터 등)에서 근무할 직업상담원을 공개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 본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본문에 포함된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부터는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등을 개편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6] '23년부터 달라지는 직업상담원 채용제도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채용부문

채용직종(직급)	담당업무	고용형태	응시단위	채용인원	근무 예정지
직업상담원 (전임)	직무설명자료 참조	무기계약직	대전청	2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할 소속기관
			청주지청	3명	
			천안지청	4명	
			충주지청	1명	
			보령지청	2명	
			서산출장소	2명	
		무기계약직 (장애인 제한경쟁)	천안지청	1명	

* 6개청 및 관할 소속기관(고용센터)는 첨부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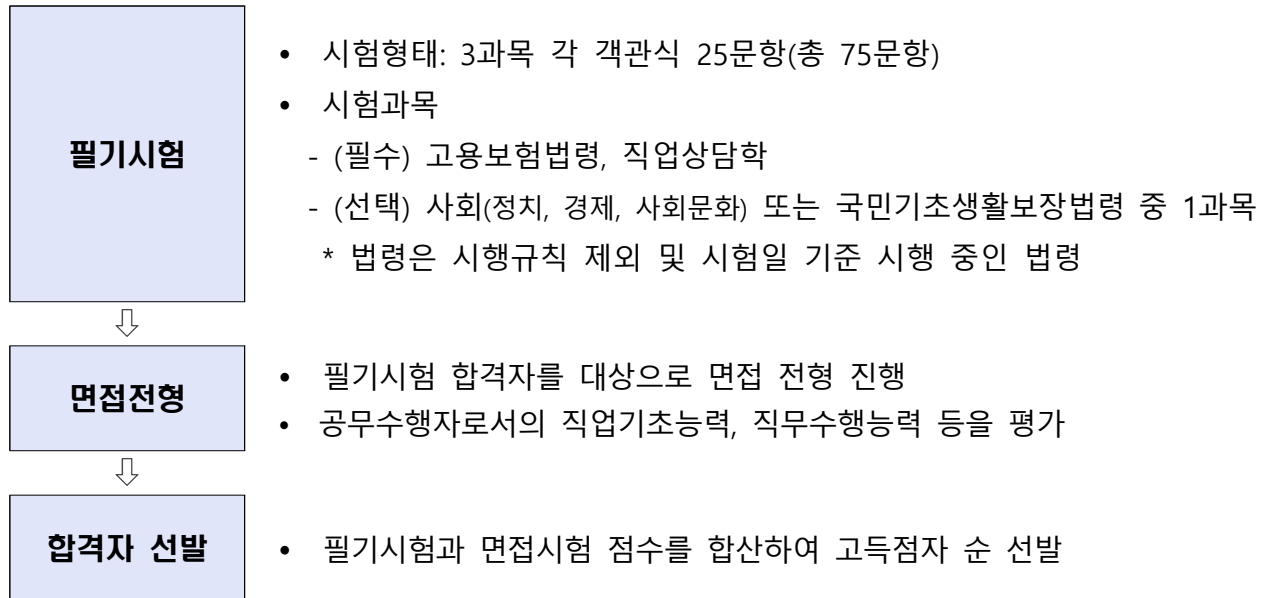
II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단, 정년연령인 만 60세 미만자)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채용일 이전 전역 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자격 및 경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직무설명자료 참조) * 직업상담 관련분야의 경력이란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공립 직업안정기관, 국·공·사립 학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 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복지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기타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타 유의사항 참조)

III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전형 일정

전형 일정	일 시	비고
지원서 접수	2022.3.10. 09:00 ~ 2022.3.17. 18:00	• 워크넷 e-채용마당(전산 입력) ※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u>다만 장애인</u> <u>전형은 현장 및 우편 접수 가능</u>
필기시험	2022.4.9. 14:30	• 시험형태: 3과목 각 25문항(총 75문항, 객관식) • 시험시간: 70분 • 장소: 대전 *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 공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2.4.15.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과목별 40점 이상, 성적순으로 응시단위(지청)별 채용 인원의 2배수로 선발, 다만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 3배수 선발
면접전형	2022.4.20.~	• 직무능력, 품성, 가치관, 조직 적응력 등 평가 * 면접은 첨부된 직무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
최종 합격자 발표	2022.4.27.	• 필기시험과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발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지청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 (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IV

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자격사항 <필기전형>	구분	가점대상 자격증	가점
	직무관련	○ 직업상담사 1급	3점
		○ 직업상담사 2급 ○ 사회복지사(1급, 2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점
	정보처리 분야	☐ 통신·정보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컴퓨터 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 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 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사무관리분야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점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 증은 가점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직무관련 자격증은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여러 개의 자격증을 제출 하더라도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은 1개만 적용(여러 개의 자격증을 제출하더라도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면접 전형>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점 또는 5점 부여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가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필기전형 시, 자격사항 가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모두 포함될 경우 중복 가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고령자와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으로 동점자일 경우 고령자·준고령자 우대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V

접수서류

제출 서류	제출 시기
NCS 기반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 붙임 서식 참조 ※ 장애인전형 응시자가 현장 및 우편 접수할 경우 붙임 서식 활용	원서접수 시
자격요건 관련(해당 부분 전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면접 시
가점대상 자격증(해당부분 전체) · 직업상담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정보처리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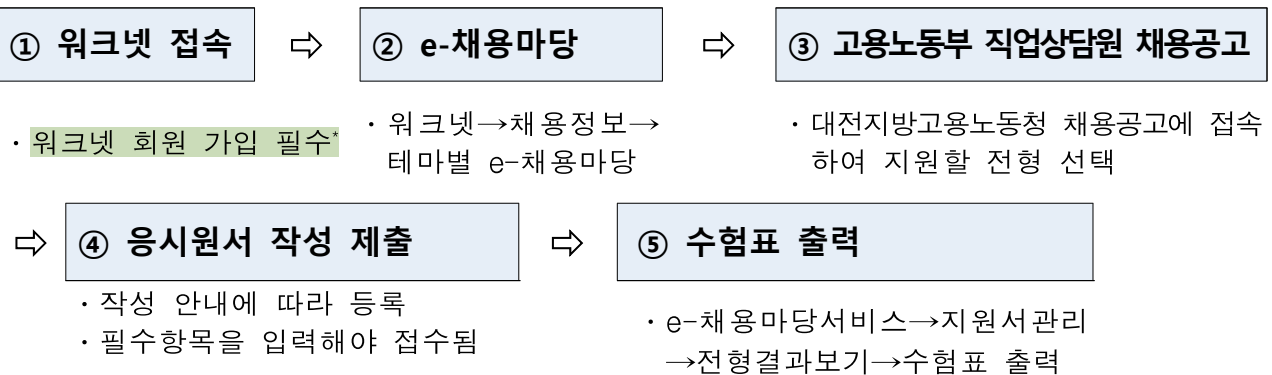
VI

근로조건

- 채용 예정일: '22.5.2.(월)
- 수습기간: 채용일로부터 3개월
 - ※ 교육성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속 고용 여부 결정
- 보수수준: 전임직급 직업상담원 1호봉<첨부 3. 보수표 참고>
 - ※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및 법정수당 별도
 -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 근무 장소: 응시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및 관할 소속기관(지청)
 - ※ 근무 장소는 최초 배치시 응시단위(청·지청) 소속 고용센터 또는 관련 부서에 근무하게 되나,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라 청 관할 내 소속기관 간 전보로 변경될 수 있음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공무직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VII 응시원서 접수절차



※ 지원서가 최종 제출되었음을 워크넷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전형은 워크넷 접수 외에도 우편 및 방문(대리인) 접수도 가능

VIII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신청[첨부5] 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자격이 있어야만 응시가 가능하오니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 근무 희망 지역(청·지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제외됩니다.

- 응시자는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6개 청 중에서 1개의 청에만 응시 가능합니다. (2개 이상 청·지청 중복하여 접수할 경우 0점 처리)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7.1.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전화 042-480-621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NCS 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

채용분야	직업 상담원	분류 체계	대분류	07. 사회복지·종교		
			중분류	02. 상담		
			소분류	01. 직업상담서비스		
			세분류	01. 직업상담	02. 취업알선	■ 고용보험 수급지원 (세분류 자체개발)
기관 주요사업	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고용보험 운영, 취업지원, 근로감독, 산업안전 등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주요업무	○ 구인구직 일반상담 및 매칭관리 ○ 직업정보관리 ○ 직업심리검사 ○ 직업훈련 상담 ○ 고용보험 수급지원					
주요업무 수행내용	○ (구인구직 일반상담 및 매칭관리) 구직자 구직욕구 및 취업역량을 분석하고, 구직활동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 구인업체 정보수집과 구인정보 구축을 위한 정보관리 및 맞춤 알선을 위한 잡서칭과 매칭 업무 수행. ○ (직업심리검사) 내담자의 직업심리검사를 위한 검사도구 선택 및 실시. 직업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및 결과에 대한 내담자와의 상담업무 수행. ○ (직업정보관리 및 직업훈련 상담) 각종 수집된 직업정보의 분석과 내담자 특성별 정보 가공 및 제공, 가공된 직업정보 축적을 위한 업무 수행. 직업훈련 정보 분석을 통한 직업훈련 맞춤 정보 제공. 지원 제도 등 구직자 특성에 부합한 안내 및 상담업무 수행. ○ (고용보험 수급지원) 고용보험 관련 수급자격 확인 및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등 지급 지원업무 수행. 취업지원설명회 교육					
전형방법	○ 필기전형→면접전형					
일반요건	연령	공고문 참조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무관				
	전공	무관				
필요지식	○ (구인구직 일반상담 및 매칭관리)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동향, 직업상담서비스 관련 법률, 직종별 구인구직정보 시스템, 고용정보 수집방법 및 동향에 대한 이해, 지역 내 직종별 고용현황, 해당직무 및 자격에 대한 이해 ○ (직업심리검사) 직업심리이론, 직업심리검사도구 유형과 도구별 해석에 대한 지식, 대상별 내담자 특성, 의사결정론, 라포(Rapport)형성 이론 ○ (직업정보관리 및 직업훈련 상담) 직무분석,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임금 및 근로조건, 의사결정론, 직업정보 관계법, 직업심리학, 직업상담심리학,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국가기술자격·전문자격 실시현황 및 과 정별 특징 ○ (고용보험 수급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준 및 지원 정책					

필요기술	○ (구인구직 일반상담 및 매칭관리) 내담자 구직요구도 분석능력, 취업상담능력, 구인구직 정보 탐색 및 분석 능력, 고용관련 법률 해석능력, 다양한 구인구직정보 발굴 및 데이터 수집 능력, 직업심리검사 활용 능력 ○ (직업심리검사) 직업심리검사도구 실시능력, 직업심리검사 해석능력, 직업심리검사결과 판정능력, 내담자 검사 시 대응능력 ○ (직업정보관리 및 직업훈련 상담) 직무분석기법, 매체별 특성에 따른 직업정보 확인 및 가공 능력, 의사결정기법, 직업정보 분석 및 제공·관리 능력,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검색 및 분석능력, 국가기술자격·전문자격 검색 및 분석능력, 구직자의 훈련과정 결정에 대한 조력 능력 ○ (고용보험 수급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원기준에 따른 정보제공 및 지원 능력
직무수행태도	○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태도, 주의 깊은 관찰과 경청의 자세, 내담자를 향한 개방적 태도와 배려심, 업무에 대한 사명감, 구인구직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분석노력, 변화하는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세, 정보관리에 대한 정확성
필요자격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자격	채용공고문 참고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정보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참고사이트	○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 www.moel.go.kr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첨부 2】 NCS 기반 입사지원서(직업상담원)

지원분야	직업상담원(전임직급)	근무 희망지역 (응시단위)	선택과목	☐ 사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장애인 제한경쟁	☐ 해당(시각장애 여부) ☐ 해당, ☐ 미해당 ☐ 미해당			

1. 인적 사항

* 인적 사항은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한글)	접수번호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취업지원 대상여부	☐ 대상(10%) ☐ 대상(5%) ☐ 비대상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 대상여부	☐ 대상(3%) ☐ 대상(2%) ☐ 비대상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가점대상여부	☐ 대상(1%) ☐ 비대상
취업우선고용 직종 대상여부	☐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 대상(만 50세 이상) ☐ 비대상			정년(만60세) 여부	☐ 만 60세 이상 ☐ 만 60세 미만

2. 교육 사항

(1) 학교 교육

* 학교교육은 제도화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직업심리검사] 관련 학교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직업(구인구직)상담] 관련 학교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보험] 관련 학교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과 목 명	주 요 내 용

(2) 직업교육(직무관련 교육훈련)

* 직업교육은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실업교육, 기능교육, 직업훈련 등을 이수한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직업심리검사] 관련 직업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직업(구인구직)상담] 관련 직업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보험] 관련 직업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과 정 명	주 요 내 용	교육기관	교육시간

3. 직무관련 경력 및 경험사항

*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고 직무관련 경험은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 활동, 연구회 활동, 동아리/동호회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재능기부/봉사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직업심리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직업(구인구직)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전산시스템 운용] 관련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선 기입하고 기타 사항을 추가로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근무·활동기간	기관명	직위/역할	담당업무
☐ 경력 ☐ 경험				
☐ 경력 ☐ 경험				

○ 그 외 모든 경험 및 경력사항은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근무·활동기간	기관명	직위/역할	담당업무
☐ 경력 ☐ 경험				
☐ 경력 ☐ 경험				

4. 직무관련 자격 사항

* 자격은 직무와 관련된 자격을 의미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험 혹은 경력사항 및 직무관련 기타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 조직, 역할 및 구체적 활동 내용, 주요 결과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 소 개 서

1.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분석 노력] 그 동안의 경험에서 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사고와 통합적인 분석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2. [의사소통능력] 지금까지의 경험 중 갈등이나 문제해결 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하여 상황을 개선한 사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3. [규정준수] 지금까지의 경험 중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사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4. [고객지향적 태도] 지금까지의 경험 중 타인의 편안함과 만족감을 주기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5.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자의 장점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응 시 자 :

(서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귀중

【첨부 3】 직업상담원 보수지급기준

(월 지급액, 단위: 원)

호봉	전임상담원 기본급	책임상담원 기본급	선임상담원 기본급	수석상담원 기본급
1호봉	1,920,000	2,025,640	2,185,620	2,370,750
2호봉	1,969,170	2,118,380	2,309,030	2,491,360
3호봉	2,022,110	2,169,350	2,364,600	2,561,120
4호봉	2,080,100	2,242,640	2,444,470	2,630,260
5호봉	2,132,320	2,301,800	2,508,950	2,697,010
6호봉	2,163,480	2,358,190	2,570,430	2,760,390
7호봉	2,208,670	2,414,800	2,632,120	2,823,880
8호봉	2,249,200	2,470,330	2,692,650	2,885,990
9호봉	2,294,760	2,524,660	2,751,880	2,949,490
10호봉	2,345,310	2,563,120	2,793,790	3,011,420
11호봉	2,393,300	2,604,220	2,838,600	3,071,600
12호봉	2,447,650	2,667,940	2,908,060	3,136,100
13호봉	2,502,540	2,727,750	2,973,250	3,198,760
14호봉	2,556,280	2,784,120	3,034,670	3,261,630
15호봉	2,616,060	2,840,310	3,095,940	3,324,230
16호봉	2,650,070	2,893,700	3,148,540	3,384,060
17호봉	2,687,500	2,929,390	3,193,030	3,444,970
18호봉	2,746,330	2,971,920	3,262,890	3,506,970
19호봉	2,799,850	3,027,220	3,306,070	3,571,830
20호봉	2,830,960	3,094,050	3,385,230	3,628,980
21호봉	2,891,590	3,162,090	3,449,990	3,687,030
22호봉	2,947,940	3,227,610	3,488,060	3,746,030
23호봉	2,988,820	3,266,760	3,527,930	3,804,670
24호봉	3,020,200	3,301,880	3,593,390	3,861,730
25호봉	3,079,030	3,361,720	3,661,180	3,915,660
26호봉	3,133,500	3,415,510	3,726,980	3,970,490
27호봉	3,183,640	3,470,150	3,787,250	4,026,060
28호봉	3,233,550	3,524,560	3,843,800	4,082,430
29호봉	3,283,080	3,578,550	3,901,650	4,140,890
30호봉 (최고호봉)	3,332,310	3,632,220	3,962,180	4,198,830

【첨부 4】 취업지원 관련 법률

법률	조 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개정 2011.9.15.>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9.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 및 그 가족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법률	조 항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법률	조 항
관한 법률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첨부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필요시 채용 절차 종료 후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귀중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첨부 6】 '23년부터 달라지는 직업상담원 채용제도 안내

직업상담에 적합하고 전문성 높은 인재 채용을 위해, 내년부터
응시자격 및 채용절차 등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응시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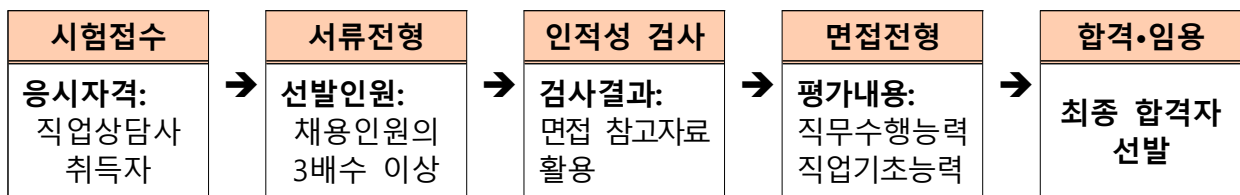
- '23.1.1. 이후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채용부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는 직업상담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과목, 일정 등은 한국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검정형, 과정평가형 운영 중)

☑ 채용절차

- 단순 지식평가 위주의 필기시험 대신, 인·적성 검사와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간소화하지만
⇒ ①서류전형을 통해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선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②인·적성 검사와 ③면접전형을 진행하여 직업상담에 적합하고 전문성이 있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 대규모 채용이 있을 경우에는 인적성 검사 대신 필기시험 진행 가능

☑ 자격증 우대

- 공공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서류전형'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 자격증 종류는 직업상담사(1급), 사회복지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가지입니다.
- * 기존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은 우대 대상에서 제외

【첨부 7】 지방청 관할 소속기관별 고용센터 현황

청		청·지청	고용센터	소속 중형센터
서울청		서울청	서울	
			서초	
		서울강남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동부	
			성동광진	
		서울서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남부	
			서울강서	
		서울북부	서울북부	
중부청	중부청 권역	서울관악	서울관악	
		중부청	인천	
		인천북부	인천북부	
			인천서부	강화
		부천	부천	
			김포	
		의정부	의정부	포천
			구리	
			남양주	
	경기 권역		동두천	
			양주	
		고양	고양	
			파주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성남	성남	
			경기광주	양평
			이천	여주
			하남	
		안양	안양	군포
			광명	
			의왕	
		안산	안산	
	강원 권역		시흥	
		평택	평택	
			오산	
			안성	
		강원	춘천	가평,홍천
		강릉	강릉	동해
			속초	
		원주	원주	
		태백	태백	
부산청			삼척	
		영월출장소	영월	
		부산청	부산	
			부산사하	
			지역협력과	
		부산동부	부산동부	
		부산북부	부산북부	

청	청·지청	고용센터	소속 중형센터
	창원	창원	함안,창녕
		마산	
	울산 양산	울산	
		김해	
		양산	
	진주	밀양	
		진주	사천
		하동	
	통영	거창	
		통영	고성
대구청	대구청	거제	
		대구	
		대구강북	
		대구동부	영천
	대구서부	경산	
		대구서부	
		대구달성	
	포항	칠곡	
		포항	
		경주	
	구미	구미	
		김천	
광주청	광주청	영주	
		문경	상주
	전주	안동	
		의성,예천	
		안동	
	익산	광주	나주,화순
		광주광산	
		영광	
	군산	전주	
		정읍	
		남원	
대전청	전주	익산	
		김제	
		군산	
	목포	부안	고창
		목포	
		해남	무안,영암
	여수	순천	
		여수	
		광양	
	대전청	대전	금산
		공주	
		세종	
	청주	논산	
		청주	진천
		옥천	
	천안	천안	당진,예산
		아산	
		충주	
	충주	제천	
		음성	
		보령	부여, 서천, 홍성
	보령지청	서산	
	서산출장소		태안